2023년 동행 테크 & 테크 중심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

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는 서울 소재 동행 테크 & 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성장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. 지원을 희망하는 동행 테크 & 테크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- □ 사 업 명: 2023년 동행 테크1) & 테크 중심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
- □ 지원대상
 - 서울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동행 Tech 및 일반 Tech 스타트업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- □ 지원내용
- 스타트업 분야별 전문과와 기업이 함께 기업 및 아이템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기업 선정
- 스타트업 종합 진단과 함께 사업 전략과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실행 지원을 통한 즉시 전력화 지원
- 지원규모: 10개사, 기업 당 최대 1.000만원 지원(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)

2. 모집개요

- □ **모집기간:** 2023. 3. 8.(수) ~ 2023. 3. 28.(화) 18:00까지
- □ **모집대상:** 서울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동행 Tech 및 일반 Tech 스타트업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
◈ 지원제외 대상

- 신청제품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(표절 포함)
- 동일(기업)인 중복 아이템으로 지원 불가
- 신청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*에 해당되는 경우
-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, 휴폐업 상태, 연체, 부도, 법정관리 중인 경우
- 회생신청 및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- 서울산업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
- *지원제외 대상 업종

업종 분류	품목코드	지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 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	46102中	담배 중개업
도매 및 소매업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22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9124	도박 및 베팅업

¹⁾ 동행 Tech: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/제품/서비스 등

□ **신청방법:** 서울스타트업허브플러스(http://www.startup-plus.kr)에서 온라인 접수 ※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(복수 파일 업로드 불가. 첨부가능 용량은 최대 10M)

□ 제출서류

- 사업신청서,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(SBA 제공양식) 각 1부 (서식1, 서식2, 서식3 필수 제출)
- 기업소개 자료(사업계획서 또는 IR 자료, 기업 자유양식) 1부
-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투자유치 이력 확인 자료: 투자자, 투자금액, 날짜가 확인 가능한 서류 각 1부
- 고용이력 확인 자료: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※ 투자유치 이력 및 고용이력 확인 자료는 해당기업만 제출

□ 유의사항

- O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자격 제외, 선정 취소 등 각종 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.
- 사업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향후 사업 참여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하여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담당자 연락처로 진행여부가 전달되오니, 담당자의 이메일/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.
-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 ※ 상기 공고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□ 추진절차

모집/접수		1차 기업진단 (지원기업 선정)		2차 기업진단 (선정기업 참여)		기업별 활용		회계정산
• 모집공고 및 접수 (서울스타트업플러스 가입 후 신청)	>	전문가 서면진단 및 지원기업 선정 진단 피드백 제공	>	기업 IR발표 후 전문가—기업이 함께 토의진행 사업전략 진단 및 기술개발 지원금 활용 안 논의	•	 협약 체결 및 이행보증 증권 제출 기술개발 지원금 지급 기업 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전문회계기관 활용 검수 및 정산 	•	 기술개발지원금 활용 결과보고 (증빙서류 제출) 정산 및 성과공유
온라인 접수		서면 진단		오프라인 진단		기업별 활용		성과공유
('23.3.8~3.28)		('23.4월 첫째주)(예정)		('23.4월 둘째주)(예정)		(' 23.5월~' 23.10월)(예정)		(' 23.11월)(예정)

※ 선정기준: 조직역량, 시장성,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전문가가 종합평가

□ 결과 통보, 협약 체결 및 기술개발 지원금 지급

○ 기업별 개별 통보, 협약체결 및 기술개발지원금 지급: '23. 4월(예정)

□ 지원금 활용 프로세스

○ 전문회계기관에 기술개발지원금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 → 사용완료 후 정산서류 일체 회계 기관에 제출하여 검수 및 정산 → 부적합 사용 시 환수처리

비용지급		사용승인 (1차 검수)		지원금 사용		회계정산 (2차 검수)		회계감사 보고서 제출
지원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안내	•	기업 승인요청 내용 검토 및 사용 승인	•	기업별 지원금 사용	•	지원금 사용 결과보고/증빙자료 제출 → 회계정산	•	회계감사 보고서 제출
(SBA→기업)		(기업↔회계법인)		(기업)		(기업↔회계법인)		(회계법인→SBA)

□ 지원금 사용기준

- 사용항목은 직접비로만 구성(간접비는 사용불가)되고, "전자세금계산서"및 "신용카드"로 지급이 불가한 개인과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, 창업자와 특수 관계인(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) 또는 창업기업 본인,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
- O 타 사업에서 환급받은 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, 부가세·관세 등 사후 환급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
 - ※ 사업비 사용액은 공급가액만 사용 가능(부가세 및 관세 등 환급금 제외)
- O 2차토의 진단 시 결정된 목적으로 사용하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변경 요청으로 변경 사용 가능함
- O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에 집행 가능하고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비 지원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최종 정산 시 환수함
-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미집행 지원금 및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

□ 지원금 사용범위

	구 분	금액/수량	사 용 범 위
	IP 권리화 및 기술 인증		제품(서비스)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화비용 (국내 출원 및 등록, PCT 출원, 개별국 출원, 컨설팅 등) 기술 인증 비용, 전문가 자문료 등 ※ 사용불가비용: 인건비, 지재권 및 기타 인증 시 대리인 성공보수료
	시장 조사		시장도입 전 성능 검증을 위한 시장조사 관련 비용 KOTRA, 전문 조사 기관 등 유료 지원 사업 이용 시 소요비용
	물류/통관 비용		• 수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(물류비, 통관비 등) ※ 단, 사후 환급/공제 비용은 사용 불가(부가세, 관세, 수수료 등)
	시제품 제작비	제한없음	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자재 구매, 외부 용역비 등 시제품개발 및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기기 구매
	지급임차료		S/W, 서버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 등 입점료, 서버임대료 등 * 사용불가비용 : 기업 사무공간 임대관련 임차료
	인건비		외부기관 · 전문가 연구용역에 따른 인건비(계약 체결 필수 및 세금 제외) <mark>내부 인력 인건비 지급 불가</mark> 인건비 사용 관련 서울창업센터 동작과 사전 협의 필요
	기타		• 사업비 사용범위 외 사용은 서울창업센터 동작과 사전 별도 협의
간 접 비	단순 기업운영 비용 및 매매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간접비용	사용불가	 식대, 유흥성 경비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복리후생비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창업기업 본인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, 범칙금 등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

□ 문의처

○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2팀 안희환 책임(02-827-0433, irene47@sba.seoul.kr)